# 성폭력대처방안을 위한 전략연구

박성희\*

초 록

성폭력(sexual violence)은 남성위주의 사회가 재생산해내는 문화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 한국의 구조적인 폭력잠재성은 성폭력의 발생을 더욱 쉽게하고 있다. 성폭력의 50-70%이상이 10대와 20대의 아동과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은 특히 피해자가 되기 쉬운 집단이고 강간외상 증후군 (rape trauma syndrome)의 이차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보호대상이다.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성폭력범죄에서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긴급연락망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대처상담전략으로 개인화능력 기르기(concept of individualization)와 협동심기르기(concept of solidality)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기상황을 좀 더 효율적으로도와주는 콘셉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일의 프라이부룩(Freiburg)의 시범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결론부분에서는 대처방안을 위한 콘셉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여성폭력 정보센타(Resource Center)를 설립하여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망을 구성하여 각 기관을 상담을 보조하며 전문적 정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경찰과 판사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성폭력담당 사법부 관계자들의 여성주의적인 성폭력 교육을 강화시킨다.

세째 :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사회 저변의 성교육/성상담 교육 연수를 의무화한다.

<sup>\*</sup>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교육학박사

이런 전략방안과 함께 평등한 성문화 건설을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급선 무이므로 메디언을 이용한 장기적인 의식전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 연구의 목적 및 범위

폭력(violence)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방적 으로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의도 를 갖고 힘 겨루기의 단호한 수단으로 나타나는 행위이다 (Endruweit& Trommsdorff: 252).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강제 적인 수단이 동원되기 때문에 곧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한국사회 의 발전을 뒤돌아보면 지난 수 십 년 간의 일제통치, 그리고 남북의 대 치라는 극한 상황에서 독재정권의 존재와 이에 대한 저항, 급격한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상황과 같은 요인들이 폭력을 구조화, 일상화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연성진, 2000:10).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00)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실 제로 폭력이 눈에 보이는 태도변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 며 이것은 한국 사회의 폭력 가능성이 사회저변에 항상 잠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은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폭력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위협도 받고 있어 이중으로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 다. 우리사회의 성폭력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질적으로도 심 화되고 있다. 검찰의 범죄분석 시계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1966년 부터 1995년까지의 30년 간의 성폭력 범죄는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인섭·김성언, 1998: 20).

평화연구자인 갈퉁(Galtung 1971)은 폭력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는 방지할 수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폭력은 육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인 피해도 일으키며, 가해자 체포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있는 폭력과 테러와 같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폭력으로 나눌 수 있고, 자신의 경쟁자에 대한 개인적인 폭력, 그리고 사회노동자층을 착취하는 구조상의 폭력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런 폭력에 대한 정의가 상이한 출처를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 모두 일치하고 있다 (Tews Wildgrube, 1992: 141f). 범죄학에서 알려진 폭력이란 겉으로 나타난 폭력이란 빙산의 일각으로 보며 실재의 폭력의 발생은 단지 상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려진 폭력의 미지수는연구를 어렵게 하는부가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폭력방지를 위한 전략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Sack, 1985). 폭력발생의 증가 현상을 드 마우지(De Mause 1977)는 변화된 양육의 목적과 양육방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 예를 들면 부부간, 부모와 자녀, 노인에 대한가족의 폭력 등은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폭력의 방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해결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자조그룹들이 만들어져서2) 전문적인 도움을받으며 폭력의 재발생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조적인 폭력잠재사회와 남성위주의 사회가 재생산하여 내는 성폭력 사후조치로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대처방안 은 실제로 여성들이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현실의 상황에 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sup>1)</sup> 권위주의 교육과 폭력에 관해서는 T. W. Adorno(1976): Studien zum autoritaeren Charakter, Frankfurt S. 108f 참조

<sup>2)</sup> 독일에서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남성폭력가해자 모임이 있고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를 위한 그룹 그리고 개울물(Wildwasser)이라는 자조그룹들이 폭력의 재발생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가족치료도 받고 있다. 또한 가족 정책적으로 가족을 위한 경제적 도움과 도덕적인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 Ⅱ. 성폭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 성폭력발생이론

여성학에서 본 페미니스트적 관점의 사회이론에서는 가해자 보다는 피 해자들에게 관심과 초점을 맟추어 구조적인 폭력 (Waldmann 8/9, Matz 70ff, Zimmermann 9/10), 남존여비사상(Sexismus) 또는 남성위 주의 사회가 폭력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의 원인과 결 과의 메카니즘은 폭력의 상처를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피해 자 자신도 사회공동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불행으로 인식하게 되어, 사 회구조적 원인은 망각되며 결국에는 삶의 일상생활에서 센세이션을 일 으킬만한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사회구성원의 관심에서 잊혀 버 리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한다. 남성위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 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의 인식 계몽을 위한 홍보물은 실제 생활에서 일 어나는 일이 아닌 가상의 세계로 착각되게 하며, 남성들은 대부분 관심 없이 지나쳐버린다. 남성들은 더 나아가서 이런 홍보물이 오히려 성폭력 을 증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폭력문제는 연예인의 사생활 들추 기 정도의 흥밋거리로 전락해버리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은 2002 년 2월 이러한 가정폭력을 언론의 가십거리고 만드는 태도에 항의하며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었

또한 폭력하위 문화관점에서는 가해자가 속해있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런 환경적 조건들이 내재화되어 성폭력을 일으키게 된다고 본다(채규만: 274).

#### 2. 국가의 의무로서 성폭력가해자의 처벌

성폭력대처 전략방향은 폭력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온다는데 주 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이 여성 스스로가 남성을 유혹하였다는 남성위주의 주장과 그리고 여성의 상해와 정신적 피해가 무시되고 간과 된다는 점은 여성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방치 될 수 없기 때문이 다3).

폭력은 개인의 행동 (action)으로 정의되며,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에게 는 행동에 대한 책임이 물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폭력의 대상인 피해자 가 평생동안 지속되는 다양한 피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리가 폭력을 행위로 규정짓게되면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 을 재고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되므 로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인본적인 사 회, 민주사회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1975 년 유엔이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함과 동시에, 1976-1985년의 여성발 전 10년을 선정하여 성차별 제거를 위한 행동강령을 세계 각 국에 추진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성차별 제거는 인류발전을 위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 1997 : 9). 1970년대 성폭력이 처음 사회의 이슈로 등 장했을 때는 매맞는 여성의 상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목되었고 성 폭력 가해자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대중의 주목 을 받게 된 성적 폭력의 전통적인 정의는 지금에는 전근대적으로 생각 된다. 그 이유는 성폭력은 일차적인 상해에 관한 단순피해로만 정의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정현미 외, 1999: 42f). 왜냐하면 1996년의 경우, 공식 집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절반 가량인 48.3%가 가해자와 피해 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인섭 · 김성언, 1998 : 88)4). 신뢰감을 이용한 폭력이란 것이 더욱 범죄에 악 용된 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대상이 된 아동의 정신적인 상처는 성폭력 행위 이전에 아동이 갖게 되는 원초 적 공포심에서부터 출발하여 성적인 접촉 없이도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 적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남성의 11.2% (최인섭ㆍ김성언, 1998: 23)는 성희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어나 는 성희롱은 폭력형태가 신체상해라는 폭력의 형태보다는 경제적, 사회

<sup>3) 1990</sup>년부터 1996년까지 성폭력 특별법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평균하여 36.55%로 다섯 명 중 두 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섭·김성언: 21).

<sup>4)</sup>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 통계자료는 서로 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가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여성개발원의 조사는 80%로 집계되어 있고 심영희(1990)의 연구는 74.3%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연구는 80-90%의 성폭력피해자가 소녀와 여성으로 보고 있다(www.zeigen-verboten.de)..

적인 위협<sup>5)</sup>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상해로만 규정되는 성 폭력은 너무 협의의 정의이며 현대사회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997년 7월의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성폭력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남성 가해자의 관점에서 성폭 력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점은 아직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남기고 있 다(전게서: 93).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이런 폭행의 가해자가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서도 성폭행과 관련된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다(Hagemann-White, C., 1992: 3). 한국의 경우도예외는 아니어서 1997년 기준으로 여성성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91%이며, 남성피해자는 9%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다(정현미 외, 1999: 27). 이 통계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인 또는 힘 겨루기는 여성이나 청소년 여학생이 피해자가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상해뿐이 아닌 광의의 피해를 의미하고 있다.

국가는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권력관계를 이용한 폭력이 이루어질 때, 중 재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런 정의는 상해의 의도와 또는 상해의 과정과 실행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요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에서 생성된 것이다. 성폭력에 관한 명백한 사실은 가해자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정확히 사전에 계획했으며, 또 계획된 의도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힘 겨루기에서 구조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권위적인 종속관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모든 종류의 상처, 그리고 성적인 행위가 개입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평등을 해치는 행위 또는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힘 겨루기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성폭력과 같은 사회적인 불균형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사회의 범죄가치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힘 겨루기에 의하여 일어나는 개인적인 폭력문제는 어떤 사회 구조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성과 관계되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는 부당한 문제를 타부시하는 것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여성

<sup>5) 2002</sup>년 롯데호텔 성희롱 피해자의 보복성 해고는 경제적 위협의 대표적 예이 다 (http://labor.womenlink.or.kr).

의 불평등과 불이익을 더욱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발생된 성폭력범죄 중 신고되는 경우는 자신의 명예 보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는 10%도 미치지 않고 있다 (전게서: 31). 여성과 여학생들이 순결을 이유로 해서 성폭력을 자신의 프라이버시로 감추게 되면 여성정책은 아 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두 가지 이유로 혼자서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며 상 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한가지는 남녀평등이라는 문제이고 다 른 하나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법치주의인 민주사회에서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상 담이나 치유를 위한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과 더불어 정상인 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되는 것이다.

#### 3.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대처 방안 연구

#### 1)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상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고조되면서 지금까지 암흑에 가려져 있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주피해자인 여성과 어린이는 피해를 밝힐 경우 신분노출로 인한 사회의 낙인 때문에 그들의 성적 피해와 성적 희생을 신고하지 않으려 하므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1998년의 성폭력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보면, 강간, 강간미수 및 심한 추행 등의 '심한성폭력'의 경우에도 총 49건 중 3건만 신고됨으로써 신고율은 6.1%에불과하였다. 더구나 '가벼운 성폭력'은 훨씬 더 낮아 총 397건 중에서신고된 것은 7건으로 신고율은 1.8%에 불과하였다 (최인섭·김성언1998:115).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친고죄의 규정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법정정책과도 맞물려 있으나 피해자들이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이며 현재와 같은 억압적 성 문화속에서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체념해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정현미 외 1999:35).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우리 사회에 강하게 뿌리내긴 순결, 정절 이데

올로기가 피해자를 죄의식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둘째로 형사사법이 성폭력 범죄의 억제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전게서:36).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으나 신고한 사람조차 경찰의 조치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전게서:117)을 주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뢰감을 갖고 상담을 받을 만한 상담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실상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한 연락 체제망의 구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성폭력의 피해자 상담전략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로 느끼게 하기 위한 긴급 연락망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적 손상인 상해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전통적인 아동보호의 개념에 따르면 연속적인 상처가 뒤따르는 것을 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하나는 폭력에 의한 상처의 인식이 가능하여야 가해자가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간이 지나면상처의 인식이 불가능하여지는 상해의 개념은 수정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희생자의 가해자에 대한 힘 겨루기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으므로정신적인 상처말고는 폭력에 의한 상해만을 따지기 때문에 성폭력 같은경우에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이차적 정신적 고통은 참고가 되지 않는다.

여성학적인 논쟁에서는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여성과 여학생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순결에 대한 상처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고려되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인가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가는 개인의 판단에서부터 시작되며 행위의 문맥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Hagemann-White, C., 1978; Honig, M-S., 1986). 즉,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지각과 자신의 성폭력경험을 어떻게 관찰하며 해석하는지는 가해자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해자들이 상담을통하여 성폭력경험을 폭력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진 독일의 경우에도 여성의 쉼터 등의 초기 상담

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는지 또는 연속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느끼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주관적인 성폭력의 결정은 피해자가 무엇으로 인하여 폭력을 당했다고 느끼는지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그리하여본인이 수긍할 만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학대를 당했다는 상황을 근거로 여성이 임시 거처하게 되는 15년 간의 여성피해자 보호소의 경험으로 보면 여성의 학대는 사법기관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Hagemann-White: 20). 그러므로 성폭력피해자가 상담소를 찾아오게되면 주체인 개인이 피해자라고 본인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의식교육이 요구된다.

아동의 성적폭력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대상의 처벌이 어려운 것은 아동이 성인과 비교하여 그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장시간이 어려운 해명기간이 필 요하다. 성폭력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의 경우와 같은 절차 로 가해자를 처리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는 두 가지의 중 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고 성폭행의 유형을 알아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가를 알 아내어 대처 방안과 피해자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처 방안 전략으로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을 침범 당 했다고 하는 것과 자주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상처들을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지에 대한메카니즘을 알 아보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6)이 앞으로 이 분야에서 발전되어야 한 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나 연속적으로 가해자의 협박이 계속되는 경우는 개인이 충분하게 성폭력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가 없고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완화되기 보다는 더욱 심화된다는 점에서 이중의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 혹은 이 차적인 피해(Riviktimisierung)를 입게 되므로 성인과는 다른 접근방식 으로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 으로서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거나 낮추어보거나 또는 부인하게 된다. 이

<sup>6)</sup> 질적연구방법에 대해서는 박성희(2002). 여성학 연구를 위한 생애사 연구법을 참고

런 경우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지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초기상담 진술이나 초기상담자의 진술이 피해자를 도와주고 상처를 인정하여 주게되는 유일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폭행에서는 특히 아동인경우 감정적인 면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건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동요, 불안정 그리고 위협의 감정으로 사태의불확실하게 진술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여 지는 이유는 요즈음 급격히 눈에 띄게 늘어난 아동에 대한 성폭력 때문이다7).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 른 분야의 성폭력은 늘지 않으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성폭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최인섭·김성언: 20). 문헌에서는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분석가 Sander Ferenczi (1933/1972:313)년 "어 린이와 어른의 언어적 혼돈상태"에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정 확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 Ferenczi는 "어른이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사실상 아동은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불안한 상태에서 가해자를 서술하게 되며 아동이 또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는 어른과 아 이의 성적 발달 정도가 현저하므로 아이들은 월등히 어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성적본능은 대상이 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되어 발달되어있는데 성인에 의한 성폭행에 의한 성교는 사랑과 증오, 부드러움과 폭력이 뒤범벅이 되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지고 강제성을 견디기 어려워진다. 아이들은 어른에게서 귀 여움을 받는 것이 강간으로 변하게 되자 '강간외상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을 입게 되며 충격을 당하게 된다. 성행위에서 어른이 자신 의 욕구만족을 위하여 아동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성폭력이라 부르 고 있다. 그런 연유에서 그런 행위는 폭력성을 갖고 있다. 특징적으로 성학대에서는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는 성적 성숙의 한계를 일찍 보이 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학대유형은 다양하며 특히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쾌감을 맛본다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성적 착 취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 뿐만 아니가 학대를 통하여 경제적 이윤의 착취도 목표가 되는데 아동을 상대로 하는 포르노가 이 경우라고 하겠

<sup>7)</sup> 전교조 경북지부 등 17개 단체는 24일 최근 알려진 영덕 모 초교생 성추생사건과 관련 하여 교감을 즉각 파면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그리고 교장, 교감, 장학사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실시를 촉구했다 (매일신문 2003. 2. 24).

다.

# Ⅲ. 성폭력과 대처 전략방안

이 장에서는 상해 또는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소개된다. 평상시에도 여성은 성행위를 할 때 수동적인 성격을 띠게 되므로 성폭력에서도 여성의 수동성을 주장하여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홍보는 단순한 언론의 가십기사로 다루어 져서 촉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의 홍보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장기적이며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은 가장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을 받게 되므로 특별한 도움과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되었다. 폭력의 경험은 실제생활에서 재현되기도 하며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버리게 된다. 상담에서는 점점 폭력의 상처들이 잊혀가게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어 접근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매춘부, 장애자 또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여성들이 다양한 성폭력의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그룹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책적으로 이 성폭력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더욱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하며 각자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성폭행 문제를 해결해야 할필요가 있는 것이다.

#### 1. 여성상담의 콘셉

1) 개인화능력 기르기 (concept of individualization)

독일의 니어작센주의 대처방안은 귀감이 될 만하다. 피해자 여성은 가해

자인 남성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여성이 '여성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성폭력당시의 상황을 현실과 분리시키는 연습을 받고 있는데 '여성의 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 남편에 위한 폭력보다는 타인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성적희롱을 당한 경우
- 여성인신매매로 매춘을 강요당한 경우
- 매춘여성이 원하지 않은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자유의 박탈과 개인소 유물로 착각)

여성의 집에서도 위기극복을 도와주는 치료적인 접근법은 아직 발달되 어 있지 않다. 간간이 성폭력상황을 극복하도록 상담하여 주는 곳이 있 다. 주로 전통적인 부부관과 가족관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개인화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있다. 즉 가해자와의 친지관계를 끊고 스스로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 나 갈등을 참는 방법보다는 스스로 미래의 삶을 모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피해자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제 1단계는 피해자 의 위기탈출을 도와주는 것이다. 상담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가해자와 가졌던 관계를 느슨하게 하거나 연계고리를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상담자는 피해자의 자아기능이 강화되도록 자아에 대한 인식(ego selfknowledge)이 생산적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정신 분석학적인 상 담에서는 피해자가 정화(catharisis), 통찰의 달성, 지성적 정서적 통찰 력 획득 등을 통하여 자아 존중감을 길러 인격변화로 이어지기를 유도 하고 있다.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담자와 피해자는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y)이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의 문제에서 친지와의 관계가 너무 밀착된 경우나 또는 친지가 바로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는 전문 상담가가 특별히 도움을 주고 있다. 친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개인 의 독립심,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이 해결법은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 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여성과 그 아 동을 위한 긴급 피난처로써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치료를 도우며 지속 적인 안정을 통해 자신의 피해의식과 상처를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 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원한 '삼성 여성의 쉼터'의 통계를 보면 52% 가 남편과 화해하며 4%만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 (http://www.woman1366.or.kr). 즉 성폭력 피해자는 짧은 시간에 자신의 독립심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남편과의 화해를 통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서 연속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단결력 기르기를 통하여 다시 사회의 일원이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2) 협동심 기르기 (concept of solidality)

개인화능력 기르기 방법과 동시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 하도록 단결력(solidarity)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폭 력의 경험이 있는 자조그룹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며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와 단절하여 고립되어 삶을 살아가는 극단적인 인생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으로 먼저 폭력의 극복방법과 폭력으로 인한 결과들을 의 식적으로 재고찰하도록(Reflexion) 도와준다.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들 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는 외상증후군(trauma)을 경험하게 되며 상담 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극도의 혼란한 행동 셰마를 발전하게 된다. 외상 증후군은 피해자의 초기 상담시기에 아주 심각한 결과로 나 타나게 된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치료자의 도움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료의 마지막 시기에는 일어났던 사건과 자신 을 완전히 분리시키며 또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생기도록 해야한다. 정신과적인 치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가 빨리 폭력의 외상증후군에서 정신적으로 이겨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신뢰감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도록 해야하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가해자에게는 역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물어져야 할 것 이다. 그것을 통하여 피해자는 삶의 위협하는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되는 않는다는 것을 통하여 상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복수심이나 억압의 감정을 발달시 키게 된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되는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데 다시 신뢰감을 찾고 적응하게 되며, 다시 남성과의 정상 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성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게도 자신 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를 안 입게 무술을 가르치는 일

보다는 강자였던 사람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하겠다.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속성과 발생 환경에 따라서 대처가 다양하지만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개인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성폭행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전반에서 폭력에 대한 인지를 새로이 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대체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거시적으로 사회전반의 폭력을 미래에 잠재적인 폭력으로 간주하고, 사회구조적인 폭력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 2. 피해자 상담기관의 문제점

독일 정부는 3-4년 간격으로 성폭력을 대대적으로 메디언에서 보도하 게 하여 국민의 의식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이런 메 스컴의 보도 이후에는 잠시 성폭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 피 해자들의 상담과 도움은 아직 방법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마치 행운을 잡는 일과 같은 꼴이 되어버렸다. 결론적 으로 여성운동가들은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도록 요구 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서로 연계망을 짜서 협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도움체계로 알려져 있다.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가 많이 있어야하며 또 지방자치제가 이런 도움을 쉽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구조적 조건들이 다른 기관들과 잘 상호 협조되어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조그룹이 강력한 대응 안을 체험에 의한 요구로서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야야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직장 안에서의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성폭력의 상담과 치료 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과 능력 그리고 판단력을 지난 전문 가의 양성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피해자가 찾아오면 상담기관 에서는 전문가의 부재로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기관에 서의 연수 교육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성희롱은 10명 중 9명이 어디다 호소할 곳이 없으며 또한 성희롱에 대한 상담을 할 장소 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처음에 아동이 얼마나 신뢰 감을 갖고 상황을 설명하느냐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므로 아동 상담 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동이 진술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상담소마 다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피해자들이 상담기관을 이용하는데 어 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피해자들이 제일 처음가게 되는 여성의 쉼터 에서 피해 여성들은 빈틈없이 만원인 공간에 놀라게 되며, 장기간 기다 려야 하는 점에 불편을 호소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나 금전적 인 손실을 걱정하게 되며 내적으로 상당히 불안정안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의 경험연구에서는 이런 기관의 도움이 너무나 성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할 때 이 사실을 믿어주는 신뢰있는 상담자를 구하는데 부터 어려

움이 있다고 전한다.

#### 3. 다양한 후속조치: 발전의 방향, 한계와 문제점

상해나 성폭력피해자에게 어떤 종류의 최선의 도움이 주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 1) 피해 여성의 보호와 상담

부부관계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성 피해는 제일 먼저 복합적인 폭력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관심이 기울여 졌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전국지부의 상담통계를 보면 약 6만 여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은 30%를 상회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심각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여성의 쉼터는 특별한여성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로 전문화시켜 이제는 부부성폭력 피해자의 안식처로 굳어졌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성의 쉼터는여성의 유일한 안식처로 여겨진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거쳐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최저 생활 보장비로 생계를 유지하며 여성의 쉼터에서 행하여지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립할 때까지 머물게 된다. 3분의 2는 자율적으로 여성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 단체는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재정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쉼터의 콘셉은 피해 여성들이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며 III장의 1장에서 언급한 콘셉으로 개인화능력 기르기를 통하여 여성이 자립적인 삶을 설계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성 성폭력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강간이다. 피해 여성 과의 초기 상담을 위해 먼저 상담원은 실제로 강간이 일어난 과정을 알아보며, 혹시 여성이 그런 것을 유혹한 적이 없는지 검토한다. 강간의 형태나 그 정도가 어떤지는 파악이 어려우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서 심층적인 문제가 상담되도록 한다. 여러 개의 독립된 방이 있어서 여성이 개인적인 경험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문치료자들과의 네트웍을 잘 구성하여서 전문가

의 도움이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할 경우, 강간(rape)과 성적 학대를 주제로 다룬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상담을 하며 최소 6개월까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제적인 도움 그리고 연속적인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 분야에는 여자변호사, 특별여자변호사, 여자 형사반, 여의사 그리고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전문 치료사의 집단 문제상담도 필요한 경우 이루어져야한다.

#### 2) 피해아동의 상담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모는 아이의 보호와 상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모는 1차적인 양육자일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윤리관의 형성에 까지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장시간 또는 단시간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피해아동의 상담은 피 해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선생님 그리고 주위의 친구에게 까지 확대시 켜 피해아동이 자신의 일상생활환경에 빨리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대처방안을 위한 모델연구: 프라이부룩(Freiburg) 모델

독일의 프라이부룩 시는 여성의 긴급전화가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여성복지부의 지원으로 새로운 상담기관을 열었다. 이 상담소는 여러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원활히 하며 지역자치제의 여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율적인 여성병원의 협력을 받는 것이 모델의 핵심이다. 병원에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 교육 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상담과 더불어 임시 보호의 거처를 만든 것이다. 24시간동안 특별히 교육을 받은 전문요원이 상근하고 있어서 피해자들 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성폭력피해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까지도 불신임하고 거부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이다. 긴급 요청이 있을 때는 여성들을 직접 병원으로 데려 오기 위한 상담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병원은 항시 성 폭력에 특별히 교육을 받은 여의사를 대기시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정신적 상담이나 의학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의사들은 법적 증거물을 확보하고 일정기간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런 병원에 긴급 구조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대부분의 병원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의학적인 검사를 거부하는데서 만들어진 것이다<sup>8)</sup>. 이 구조대는 피해자에게 의학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의학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계속되는 전화상담은 최소의 도움이라 정의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는 만들어 졌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경찰과도 긴밀한 연락망이 확보되어있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친지에 의해서 일어난 폭행은 특별히 중형을 받도록 연계 지원망을 짜고 있다.

### 4)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1980년 Cheryl Benard와 Edit Schlaffer가 쓴 고전인 "Der Mann auf der Strasse"(거리의 남자)를 보자. "남자들을 오늘밤 집으로 커피초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명의 정도는 그 정도까지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가?" 라고 적고 있다. 이 소설에서 보아지듯이 여성의 성적 공격은 거의 일상생활사가 되고 있다. 다양한 여성의 성희롱, 즉 전화희롱, 만지거나 따라오는 따위의 성희롱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법체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경우 단지 "놀림"밖에는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대부분은 낯선 사람에 의한 폭력보다는 주로 자신과 관계하고 있던 친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여자들은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불안정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영향이 장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1993년 서울대 성희롱 소송사건이 발생하면서 공개적인 사건으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장에서의

<sup>8)</sup> 한국에도 2001년 한국성폭력 위기센타가 만들어져서 성폭력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 법률, 심리의 통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안정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상담과 의료지원의 통합시 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기센타는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된 경우에만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채취를 하고 있다.

성희롱은 더 이상 묻혀버리지 않고, 변화된 여성의 시각에서 비판되어 지고 있어 새로운 차원에서의 대처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1996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법에 서 명시하고, 남녀 고용평등법(1999. 2)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7)에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적극적 대처방안은 미약하며 노동단체에서 여성 의 의식이 조금 성장하여 기업이 성희롱에 관하여 여성근로자를 보호하 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내 성희롱상담소 설치 등은 아 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체의 연수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회사 안에서 성폭력을 적극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 우 금속노조(IG-Metall)에서는 성희롱을 산업체 연수에 필수적으로 포 함시키도록 했다. 남성들로 짜여진 인사위원회는 강한 의구심을 갖었으 나 결국 승낙했다. 지금까지 사회구조에 널리 퍼져있는 성희롱문제를 상 담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하였음을 인정해야 하며 직장내의 성희롱 상담 소의 개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힘겨루기에서 약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도 끊이지 않 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대학교 내에도 여교수가 중심으로 된 성희롱 상 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청과의 긴 밀한 협력은 필수적인데 이것은 여성이 성희롱 문제를 공개하고 일자리 를 그만두었을 경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성의 쉼터에서는 심리 치료자들과 함께 상호협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기간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안정을 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층 심화된 도움도 받을 수 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지도자층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소년보호와 관계된 분야의 직원 연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주말세미나를 통해 성희롱문제를 다루면서 평등한 성문화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성희 롱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도록 한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보 호하기 위해서 성폭력을 타부시하기 보다는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것을 위하여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메스컴 보도, 연극상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성폭력이 주제로 다루어져야하는데 성폭력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이 깊은 연계를 갖고 다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관계된 전문적 인 단일화된 프로젝트보다는 성폭력/교육 그리고 가족상담 등의 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 4. 연계망의 결핍: 연계기관이나 법률적인 수정에 관한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직 충분한 성폭력을 상담할 충분한 기관이 없고 법적으로도 아직 여성에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관이 생겨야 하고, 연계망이 잘 구축되어야 하는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여 본다.

대체로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상담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본다. 하나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차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지역차란 어떤 곳에서는 상담치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기도 하며 소녀의 쉼터나 임시거주지가 전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법적인 가해자의 처벌문제가여러모로 법제화가 안된 상태이어서 현재의 법제 또한 여성과 아동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성폭력에 관해서는 친고죄가 성립되므로 근본적인 입법이 결여된 상태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성폭력 상담기관의 도움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으로 산업체 등과 같은 기업의 연수교육에서 또는 성교육이나 성폭행교육을 직업연수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성상담 센타가보수적인 기관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자조그룹들이 보수적인 운영단과 손발을 맞추기 힘든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적으로 또는 형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여성문제와 더불어서 해명해 야 할 것은 아직도 많다. 한편으로는 남성 가해자의 책임감을 각성시키 며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여성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기대되며, 여성 정책 적인 면에서의 콘셉 연구에서 여성부는 선구자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 가해자인 남성이 가족의 일원인 남편으 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다시 죄책감과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회 화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다. 피해자인 여성들은 수년간을 성폭력의 피 해자로서보다는 공범자로 느끼거나 때로는 가족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여성의 자아 존중감의 발달정도와 개인화 능력과 관계가 있다. 남성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가해자에게 다시 한 번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동치료로 인하여 가해자 스스로 가 이제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치료는 세계 각국의 예로 보면 거의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신고되면 경찰의 신속한 대응력이 요구된다. 경찰은 제일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여 현장조사와 수사를하게 되어있는데 최근의 인기연예인의 경우에도 드러났듯이 피해자의 입장을 운운하며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는데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 까지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가정폭격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확보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어 경찰의 신속한 처리가 되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가정폭력수사지침이 다시 확인되어야 하며 신속한 조치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요구되고 있다 (2002년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성명서).

# Ⅳ. 성폭력 홍보 캠페인과 전략 실행 방법

성폭력 홍보 캠페인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캠페인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 일년정도로 시간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며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 교정을 통하며, 성폭력이 예방되도록 목표를 잡는다. 이런 캠페인의목적은 공공기관 등에서 스스로 여성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하며 또한 직장에서 여성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며 해결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세 가지로 캠페인 전략방향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상담기관들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지원하고 서로 연계망으로 이어지게 하며
-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야기되는 남여 갈등문제에서 새로운 질적 변화를 유도하며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며 또한 가해자에

게는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 심리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사들뿐이 아닌 사회저변의 기관들과 직업군을 하나의 연계기관으로 묶는다.

- 지금까지의 상담기관들이 하지 못했던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별과 문제중심으로의 해결을 강화하며 또한 현재에 가장 많이 일어나 고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더욱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의 예 방을 위하여 효과적인 개입을 유도한다. 이런 전략을 실행을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여성폭력 정보 센타"(Resource Center)를 설립하여 이곳을 모체로 다른 상담소와 연계망을 구성하며, 관련 기관들의 일을 보조하며 또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발전을 위해 성폭력정보와 교육을 계속 제공한다. 성폭력에 관계된 학문적, 현행의 정보를 수집하며 성폭력 문제에관심이 있는 여성들과 기관들이 소속 단체와는 별도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운영한다. 정보 센타가 성폭력에 대비한 정책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하며 이런 센타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질적이며 양적인 상담기관들의 정보들이 서로 전달될 수 있는 연계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요구에 의한 것이다. 정보 센타는 자조그룹들과 현재의 기관들을 연결시켜 성폭력에 관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견하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일이 정보센타에서 해결하여야 할 일이다.

- 여성프로젝트에 관계된 상담과 자료 그리고 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하도 록 하며 특히 전문적이며 유능한 전문가들을 발굴하며 특수 상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폭력과 관계되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영역들은 정보 센타가 특별히 지원하며 문제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여야 한다. 각각 상이한 기관이 하나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폭력 문제는 전문기관들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또한 자조그룹들과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담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그레미엄을 만들어 문제의 해결을 다각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레미엄은 항상성을 갖

고 장기적으로 법률가 그리고 의학자들과 함께 사회 심리적인 연계망을 짜고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이나 수정, 제언에 관한로비기관이 되어야 한다.

- 그리고 외국에서의 문헌이나 자료 등을 수집하며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나가는 중추적 구실을 하여야 한다. 스칸디나비아반도, 네덜 란드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정책들은 한국의 법보다 아주 선구적 인 지위에 있다. 외국의 운영사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일, 그리 고 상담소의 경험 사례집 등을 적극 활용하는 최고의 정보기능의 구실 을 하여야 한다.
- 현재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의 성폭력 관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한다. 여러 종류의 홍보물이 연령, 학력 또는 지역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되도록 한다. 전 국민의 홍보를 위하여 각 지역의 종교적인 기관과 연계를 갖고 대도시에는 사회문화 기관들과 연계망을 짠다.
- 정보 센타는 문제개입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제 상황이 조화되어서 복잡한 문제를 항상 미래지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콘셉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보다는 사회의 특성에서 일어나는 위기개입모형에 따라서 원조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더 이상 센세이션이나 분노 또는 갈등을 흥미위주로 보도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식 전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의 의식전환은 질적인 교육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지영역에서 일어나는 인식에서 뿐 아니라 진정으로 성폭력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의 변화까지도 유도하여야 한다. 이것은 성인교육으로서의 콘셉으로서, 기업연수 교육에서도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정보 센타는 성인교육으로서의 성폭력문제 개선을 위한 콘셉과 또한 전문가들을 연수기관에 중개해 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정보 센타의 연수 교육 등을 통하여 관계자들의 감정적인 분노를 이겨내고 여성평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주무관청(instanzen)들이 여성주의 시각에서 성폭행에 대처하여 야 한다.

1985년의 Bart의 연구에 의하면 강간인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쾌감을 얻는 다고 한다. 이것과는 반대로 현재의 법으로는 성기삽입이 아닌 경우는 성폭력이나 불법행위로 보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으로 보아지며, 이런 경우는 성적 교제를 강요한 폭력이나 성강요 등의 간단한 경범죄로 취급이 된다고 한다.

성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주무관청인 사법부,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발달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직장조직 에서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캠페인"이 직장의 상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 에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영향력있는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하 며 각 직업군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위영역을 발달시키고 또한 실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경찰간부는 직 계존속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사적인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개 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근무태만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판사는 성폭 력에 관해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또 의사는 피해자를 위해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히 진단서를 발부하고 성폭력 고소를 위한 증거물채취 등에 적극 협력 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재판부 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고려한 법률적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내무부에 위원회를 직속으로 두어서 직접 여성부와 공조 하는 법률가 집단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등문화건설을 위한 전문영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성폭력과 관계된 사회적 갈등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남녀 평등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중산층의 교육의 확대하며 성 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찰간부들과 법조계의 교육하고 또한 의학계의 여성간부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도록 연계망을 구축하여 한 다. 그리고 정부의 여성간부들과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그레미엄을 만들 어서 사회의 지도자급에서 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법률제도 등을 검토 하여 성폭력특별법의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그것들이 합당한가 검사하도 록 하며 또한 필요한 개선방안을 유도하도록 하며 불일치를 줄여 나가도록 한다.

- 부부관계라도 상해나 상해에 준하는 의심이 있을 때는 경찰은 가해자 를 신속하게 임시구속 한다.
- 강간을 당한 여성인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증거물 채취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의사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 여야 한다.
- 법률적인 상담책자를 통하여 피해자들 스스로가 소송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며 또한 인간의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기본권을 주 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관이나 또는 주위의 성폭력과 관련한 상급자들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 고 있는지 피해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방법이다.

사회심리치료사가 도움을 줄 때는 법률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며 시기에 따라 법적인 소송절차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적절한 법적인 상담을 해주 는데 이것은 폭력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와 협박을 피해자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며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가해자는 법적 인 정보가 없으므로 성폭력이 "희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계망과 관계된 일 중에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부의 기관이 아닌 비공식 그룹들이 연계망을 짜고 있는 그룹들과 함께 "일상생활의 폭력 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협력을 구하는 일이다. 행사를 효과 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영역의 일상의 생활에 영향력을 끼 치기 위하여 실제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을 심문할 경 우 소송절차의 변화도 필요한데 판사가 직접 심문을 할 때 참석하거나 또는 연계망의 그룹중의 책임자가 직접 참석하여 여러 번 피해자가 지 난 경험을 상기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구의 결과(www. zeigen-verboten.de)로는 의사나 경찰 그리고 변호사들과 의 대면은 피해아동에게 거의 도움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쳤기 때문 이다. 경한 경우에서 때로는 피해아동에게 다시 한 번 피해를 주는 보고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 호하기 위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방과 단체들이 시범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캠페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 니더작센 주에서는 이것이 잘 되어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 단체와 의학계, 법조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의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연계망을 짜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기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체계가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계망으로 이루어진 후원단체들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법조계, 의학계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후원은 그 조직을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교육/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회적 운동으로 확장시킨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잠재적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이라던지 또는 잔인한 간섭이라던지 침해 또는 폭력의 사용 등은 이제 사회에서 더 이상 묵인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성폭력에 대한 결과만을 흥미로 보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환경, 즉 남성들의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폭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과 그것의 장기적인 영 향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성폭력의 50-70%의 피해자가 아동인 것 에 비추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연수를 위한 성상담/성교육 프로 그램 등을 통하여 상담원들을 확충하여 나가는 것은 체계적인 연계망을 넓혀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아동의 학대나 성 문제와 관련하 여 학교는 교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일이거나 또는 추가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당국과 여성부가 같 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성상 담 전문선생님을 두어서 선생님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어 대신 나머지 시간에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 다. 여성 해방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여성의 자아 존중감을 강조하는 여 학생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또한 (잠재적인 성폭력자가 될 수 있는) 자라 나는 남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 상의 교육현장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이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 다. 정규적으로 부모들에게 폭력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편지를 보내는 작은 실천들이 행해 져야 하며 또한 교회나 청소년단체들이 폭력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성폭력 초범에게 범죄에 맞는 제

재(벌)이 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초범으로 하여금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도록 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질적 연구결과에 의해서 아주 소수의 가해자만이 병적으로 인해 성폭력을 일으키며, 대부분은 그동안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점점 강도가 강해진 메카니즘을 발견했기때문이다. 충동적인 공격에서부터 폭력성을 증가시키며 그것이 곧 습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도록 해야한다. 이 과제는 전문기관들의 과제이다. 재사회화 프로그램에는 가해자가정상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전문병원에 입원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치료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느끼며 행복의 추구를 위한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찾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알맞은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되도록 빨리 피해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상담과 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아동과 여학생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주며 또한 극복을 시작할 수 있는 목력을 인지시켜주는 심리치료도 여성에게 재성찰의 기회를 주며 슬픔을 극복하게 해주며 희망을 주며 친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결국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강한 면을 발견하게 도와주며 또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 스스로를 위한 자신의 길을 찾게 도와주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준호·김선애(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연구보고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 박성희(2002). 여성의 자아발견에 대한 생애사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2002년 한독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47쪽~70쪽
-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 나남출판
- 연성진 (2000).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 서 (00-17)
- 전영실 (1999).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06)
- 정현미 외 (1999).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연구보고서 (99-02)
- 채규만 (2002): 성폭력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273쪽~287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최인섭 김성언 (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 (1995). 성폭력상담의 실제
- 한국여성개발원 (1997). 성폭력상담의 실제
- Bart, Pauline/O'Brien, Patricia H. (1985). Stopping Rape. Successful Survival Strategies. NewYork/Oxford/frankfurt
- De Mause (1985): Hoert ihr die Kinder weinen? Eine psychogenetische Geschichte der Kindheit. Frankfurt
- Galtung J.(1971): Gewalt, Frieden, Friedensforschung. Kritische Friedensforschung, D. Senghaas (eds.). Frankfurt: 55–104.
- Ferenczi, Sandor (1933/1972). Sprachverwirrung zwischen den Erwachsenen und dem Kind. *Die Sprache der Zaertlichkiet und die Sprache der Leidenschaft*, Ders.: Schriften zur

- Psychoanalyse Bd. II, hrsg. von Michael Balint. Frankfurt: 303–313
- Hagemann-White/Lang/Luebert/Rennefeld (Ed.) (1992). Bestandanalyse des Helgerinnensystems in Niedersachsen im Bereich Gewalt gegen Frauen und Maedchen, *Niedersaechsisches Frauenministerium* Hannover
- Hagemann-White (1978). Gewalt und Geschlecht, *Wege zum Menschen*, 30. Jg., H.2/3: 49-57
- Honig, Michael-Sebastian (1986). Verhaeuslichte Gewalt. Sozial Konflikte, wissenschaftliche Konstrukte, Handlungssituationen. Eine Explorativstudie ueber Gewalthandeln in Familien. Frankfurt

http://www.woman1366.or.kr http://www.zeigen-verboten.de

# A study of the Concepts to Confront Sexual Violence

### Seonghie Park

Sexual violence is originated from structural problems that an androcentric society products. It can be more easily occurred by structural aggression potentiality in Korea and over 70% of that are focused on teenagers children and twenties women. Children are special objects to be protected because they can be easily a group of casualties and experienced secondary victimization like rape trauma syndrom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an emergency connection network as a way of confrontation for women and children because the casualty is only one witness in the sexual criminal and needs to be conscious herself as a casualty. It suggests concept of individualization and concept of solidarity as consultation concepts to confront sexual violence. And it also suggests a model project of Freiburg in Germany in order to help to understand more effective helping concepts for the casualty's emergency. In the conclusion part, it suggests three strategies as a confrontation concept.

- Establish a Resource Center to construct a network with consultation centers against sexual violence and support their consultation services and constantly provide profession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 Enhance feministic confrontation against sexual violence of the persons concerned of law enforcement and change of understanding of police and judges.
- 3. Obligate the training for sex education or sex consultation to prevent sexual violence.